

수의사 면허증 일제갱신 안내

농림부 공고 제2000-77호

공 고

수의사법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수의사 면허증 일제갱신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.

2000년 8월 일
농림부장관

수의사면허증 일제갱신 공고

1. 갱신신청기간 : 2000.8.28~9.26

2. 갱신 신청장소

거주지관할 대한수의사회 시·도지부 및 군진지부

3. 구비서류

갱신교부신청서

거주지관할 수의사회 시·도지부 및 시·군분회 에서 배부

면허증

분실의 경우에는 분실경위서

사진 2매

탈모정면·상반신 반명함판

수의사면허증 일제갱신 안내

농림부 및 우리회에서는 사진이 부착된 면허증의 교부를 통하여 본인여부 확인을 용이하게 하고, 수의사 분포현황 및 취업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수의사법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거 수의사면허증 일제갱신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, 2000년 신규면허자를 포함하여 모든 수의사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일제갱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다 음

1. 갱신신청기간 : 2000.08.28 ~ 09.26

※ 갱신신청기간후에는 구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으며, 신청기간 후 면허증 재교부신청시 수수료 부담

2. 갱신신청장소

거주지관할 및 소속 대한수의사회 시·도지부 및 시·군분회
각 시·도지부에 우편접수가능(구비서류가 미비하면 접수불가)

3. 구비서류

갱신교부신청서 제출

우편안내 및 갱신신청장소에서 배부

갱신교부신청서는 정자로 작성하여 주시고, 미기재된 부분이 있으면 접수가 불가합니다.

구면허증 반납

구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경위서

※ 동물병원 개설 등 면허증이 필요한 경우, 갱신교부신청 시 발급하는 접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음

사진2매

탈모정면, 상반신, 반명함판

사진은 뒷면에 면허번호 및 성명을 기입하여 제출